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8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 한병도 • 박지원 • 박홍배

신영대・박 정・김영배

유준병 • 위성곤 • 서영교

이광희 · 황운하 · 이해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등의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2023.3.23.)하고, 입법 개정 때까지 적용 중지와 함께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권고함.

국회가 권고한 시일 내에 개선 입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비업 종사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바 해당 조 문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고, 만약 경비업자가 이를 어 길 경우 허가관청이 허가 취소 혹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9조).

법률 제 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5		
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			
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u><단서 신설></u>	다만,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			
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	<u><삭 제></u>		
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			
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u>때</u>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	②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16. (생 략) <u><신 설></u>

③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 17.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 손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 하게 한 때
- ③ (현행과 같음)